



### 「2022년 제1차 경찰공무원 시험」 형사법 기출문제 및 해설(9)

| 오상훈 교수 | 박문각 경찰학원



#### 32. 합정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합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 ②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합정 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합정수사에 기한 공소 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 ③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도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
- ④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비공개수사는 가능하지만, 신분위장수사는 위법한 합정수사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④**  
**[해설]**  
 ① O :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합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 그렇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설명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합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7.7.12., 2006도2339; 대판 2013.3.28, 2013도1473; 대판 2020.7.9, 2020도483). 기출문제집 수사증거 기본문제 14 ③ ★

② O : 대판 2008.10.23, 2008도7362 기출문제집 수사증거 보충문제&심화문제 19 ①

③ O : 대판 2008.10.23, 2008도7362 기출문제집 수사증거 기본문제 09

④ X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에서 2021. 3. 23.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제25조의2(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①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이하 “디지털 성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할 수 있다.  
**제25조의3(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①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한다. ★★★

#### 33. 다음은 체포 구속에 관한 설명이다.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다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검사는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영장 청구 없이 석방할 경우에는 석방할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긴급체포서 사본과 함께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하고, 만약 사후에 석방통지가 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도 긴급체포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소급하여 부정된다.
- ㉡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서를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피의자신문 절차도 강제수사의 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강제수사가 아니므로 피의자는 검사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 ㉣ 영장실질심사는 필요적 변호사건이므로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 선정의 효력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도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 ㉤ 공동피의자의 순차적인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가 수사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심문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항고할 수 없다.

① ㉠(O) ㉡(O) ㉢(X) ㉣(O) ㉤(X)  
 ② ㉠(O) ㉡(X) ㉢(O) ㉣(O) ㉤(X)  
 ③ ㉠(X) ㉡(O) ㉢(O) ㉣(X) ㉤(O)  
 ④ ㉠(X) ㉡(X) ㉢(O) ㉣(X) ㉤(O)

**[정답] ④**  
**[해설]**  
 ㉠ X :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아니하여 석방되었음에도 검사가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석방통지를 법원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과 경위, 긴급체포 후 조사 과정 등에 특별한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단지 사후에 석방통지가 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도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성이 소급하여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4.8.26, 2011도6035). 기출문제집 수사증거 기본문제 89 ④

㉡ X :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서를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피의자신문 절차는 어디까지나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본문, 제200조의 규정에 따른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피의자는 「헌법」 제12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그와 같은 권리를 알려주어야 한다(대결 2013.7.1, 2013도160). ↔ 강제수사 X 기출문제집 수사증거 기본문제 05 ④ : 125 ③

㉢ O : 대판 2010.10.28, 2008도11999 기출문제집 수사증거 기본문제 105 ①

㉣ X : 선정된 변호인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제201조의2 제8항). ↔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도 X  
 ※ 구속전 피의자신문제도(영장실질심사) 기출문제집 수사증거 기본문제 117 ㉠ : 120 ②

㉤ O : 제214조의2 제3항 제2호 /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체포·구속적부심사의 간이기각결정, 기각결정과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못한다(제214조의2 제8항). ※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기출문제집 수사증거 기본문제 139 ④ / 141 ③

#### 34. 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 ㉡ 피고인이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증거물의 예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 ㉢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여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하여지는데,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이다.
- ㉣ 「형사소송법」 제150조 증언거부사유, 제184조 제3항 증거보전청구사유, 제221조의2 제3항 증인신문청구 사유의 소명은 증명의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입증에 허용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④**  
**[해설]**  
 ※ 옳은 것은 ㉠, ㉡, ㉢, ㉣ 4개이다.  
 ㉠ O : 대판 2017.5.30, 2017도1549 기출문제집 수사증거 기본문제 215 ① 해설

㉡ O : 대판 2015.4.23, 2015도2275 기출문제집 수사증거 보충문제&심화문제 135 ①

㉢ X :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과 관계에서 정하여지는데,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나,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대판 2012.7.26, 2012도2937). 기출문제집 수사증거 기본문제 261 ①

㉣ O : 증명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소명이 있다. 증명이란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 즉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비하여, 소명이란 확실까지는 얻지 못하였지만 대강의 심증을 얻은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소명의 경우 엄격한 형식이나 절차가 요구되지 않고, 증명의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입증에 허용된다. 기피사유의 소명(제19조 제2항), 증언거부사유의 소명(제150조), 증거보전청구사유의 소명(제184조 제3항), 증인신문청구 사유의 소명(제221조의2 제3항), 상소권 회복청구 원인사유의 소명(제346조 제2항)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 증거재판주의 ★★★

㉤ O :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제56조). 따라서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은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한하므로, / 공판기일 전의 증인신문청구,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의 증인신문이나 검증의 경우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기본이론서 수사증거 308p. ★

< 다음호에 계속 >